

1. 개정이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사유·절차 및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수정화업 등록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대체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며, 지하수 수질기준 항목과 수질측정기록부의 기록 항목을 현행화하는 등 그 밖에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종료 신고의 사유와 세부적인 절차 마련
(제15조제7항~제9항 신설, 별지 제18호의2, 제18호의3 신설)

- 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의 변경신고 사유를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의 변경 및 유출지하수 이용용도의 변경시로 규정하고, 그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

나.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애시 조치사항 규정(제15조의2 신설, 별지 제12호 개정)

- 1) 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 관측정의 설치 및 이용시설 점검·개선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이행절차를 마련

다. 지하수정화업 등록 시 지자체 확인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제49조제2항2제2호, 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개정)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등록증’을 공동이용 대상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변경
라. 지하수 수질기준의 특정유해물질 중 ‘페놀’을 ‘페놀류’로 변경(규칙 별표 9 개정)

1)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물질이 아닌 총페놀 함량으로 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페놀항목을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페놀류’로 명확하게 규정

마. 수질측정기록부의 기록항목을 지하수 수질기준과 동일하게 변경(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개정)

1) 수질측정항목의 유기인을 다이아지논과 파라티온으로, 페놀을 페놀류로, 6가크로뮴을 크롬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추진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 협의 예정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15항”을 “제1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전단 중 “제7항에”를 “제10항에”로, “제7항의”를 “제10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2항”으로 한다.

⑦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변경
2. 유출지하수 이용용도의 변경

⑧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 또는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종료 신고서에 변경·종료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

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종료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해에 따른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유
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지하수 장해 방지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관측정의 설치 및 수량·수질의 모니터링
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점검 및 개선
3.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사유
2. 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제2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

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별표 2의2 중 “(제15조제15항 관련)”을 “(제15조제18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2)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을 삭제한다.

다) 공사용, 화장실용, 공업용, 농·어업용: 급수시설

별표 9 제2호의 특정 유해 물질(16개) 중 “페놀”을 “페놀류”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8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15조제12항·제13항”을 “시행규칙 제15조제15항·제16항”으로 한다.

별지 제3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합니다)”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
[]개선명령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일

통보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통보 내용	시설명
	이행완료 내용
	이행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주소)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	--------------

- [] 「지하수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 「지하수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2항
-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
- [] 「지하수법」 제10조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에 따라 이행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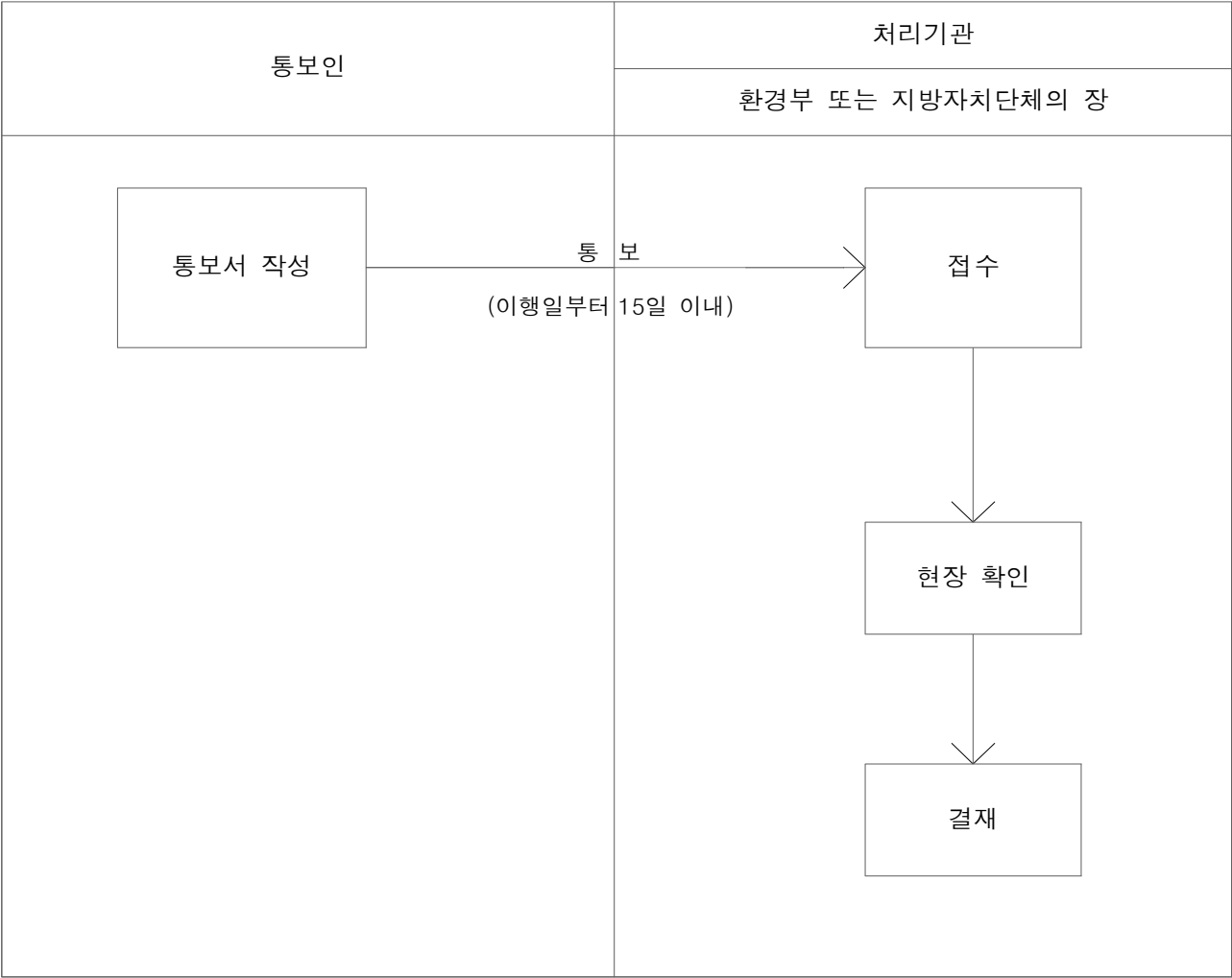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통보인 제출서류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2항에 따른 개선명령, 제9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완료의 통보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자 (※ 신고인 과 다를 경 우 작성)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발생현황	유출지하수 발생 위치	유출지하수 발생량 m³/일	
	유출지하수 발생시설 구분 □ 건축물 □ 지하철 역사 □ 터널 □ 전력구 □ 통신구 □ 기타()		
이용계획 내용	이용용도별 이용계획량(총 m³/일) * 해당하는 부분 작성, 복수 작성 가능 □ 소방용(m³/일) □ 청소용(m³/일) □ 조경용(m³/일) □ 공사용(m³/일) □ 화장실용(m³/일) □ 공원용(m³/일) □ 냉난방용(m³/일) □ 공업용(m³/일) □ 농업용(m³/일) □ 어업용(m³/일) □ 기타 (용) (m³/일)		
이용시설 공사내용	시공업체명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대표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공사개요 ※ 시공업체가 여러 업체인 경우, 시공업체명에는 대표 시공업체 한 곳을 기재하고, 공사개요는 각각의 시설공사에 대해 모두 기재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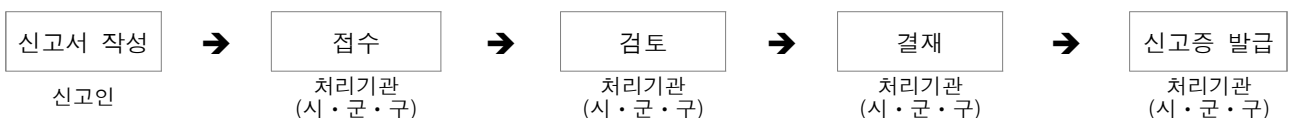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3. 위임장(신고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신고번호 제 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자 (※ 신고인 과 다를 경 우 작성)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유출지하수 발생 위치		유출지하수 발생량 m³/일
유출지하수 발생시설 구분 ☐ 건축물 ☐ 지하철 역사 ☐ 터널 ☐ 전력구 ☐ 통신구 ☐ 기타()		
이용용도별 이용계획량(총 m³/일) ☐ 소방용(m³/일) ☐ 청소용(m³/일) ☐ 조경용(m³/일) ☐ 공사용(m³/일) ☐ 화장실용(m³/일) ☐ 공원용(m³/일) ☐ 냉난방용(m³/일) ☐ 공업용(m³/일) ☐ 농업용(m³/일) ☐ 어업용(m³/일) ☐ 기타 (용) (m³/일)		
「지하수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 계획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유출지하수 이용 [] 계획 변경 신고서
[] 종료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소유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자 (※ 신고인과 다른 경우 작성)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유출지하수 발생량	m ³ /일	이용계획량	m ³ /일
변경·종료 내용			
변경·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
지하수 이용 ([] 계획 변경, [] 종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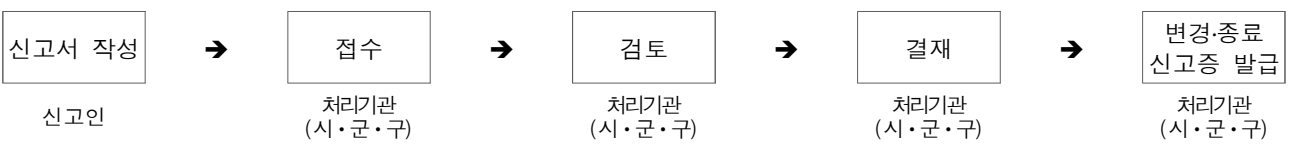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변경·종료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위임장(신고인이 소유자와 다른 경우)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고번호 제 호		
유출지하수 이용 ☐ 계획 변경 ☐ 종료 신고종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자 (※ 신고인과 다를 경우 작 성)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유출지하수 발생 위치	신고번호 제 호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유출지하수 발생량 m³/일	이용계획량 m³/일	
변경·종료 내용		
변경·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 (☐ 계획 변경, ☐ 종료)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질측정기록부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서명 또는 인)			
구분		관측정 위치	상류지점		하류지점	
			①	①	②	③
측정일시						
지하수위(m)						
외관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	일반 오염 물질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균수/100mL)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특정 유해 물질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류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타				
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			측정결과 종합의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작성요령

1. 관측정 위치는 지하수 주 흐름방향의 상류지점, 하류지점의 관측정 위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수질측정항목 중 기타란에는 검출가능 항목으로 추가 조사한 항목을 적습니다.
3. 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란에는 관측정 설치자가 직접 측정한 경우에는 자가 측정으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측정 결과 종합의견란에는 수질측정 결과 기준 초과항목, 지하수위의 증감, 오염물질의 검출 또는 증가 등 특이사항에 대한 작성자의 의견을 적습니다.
5.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 제원(諸元: 시설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은 매분기별로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작성합니다.

시설종류	설치연도	오염물질종류	규모(용량)	기 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 ⑥ (생 략) <u><신 설></u>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중 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한다.</u> <u>1.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의 변경</u> <u>2. 유출지하수 이용용도의 변경</u> <u>⑧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변 경 또는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 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의2서 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 · 종료 신고서에 변경·종료내 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u> <u>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 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 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변경·종료 신고증을</u>
<u><신 설></u>	
<u><신 설></u>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 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제1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발급해야 한다.

⑩ -----

----- 제18항-----

-----.

⑪ 제10항에 -----

----- 제10항의 -----

-----.

-----.

⑫ 제10항-----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 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⑪ ~ ⑮ (생략)

<신설>

1. 2. (현행과 같음)

⑬ 제12항-----

-----.

⑭ ~ ⑱ (현행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

제15조의2(유출지하수 이용으로 인한 지하수 장애에 따른 조치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지하수 장애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관측정의 설치 및 수량·수질의 모니터링
2.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점검 및 개선
3.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사유

2. 지하수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

	<u>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 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u> <u>2. 현장사진</u> <u>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 인해야 한다.</u> <u>⑥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법 제9조의2제10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4항에 따라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u>
제42조(출입·조사 공무원증) 법	제42조(출입·조사 공무원증) 법
<u>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u>	<u>제21조제5항-----</u>
<u>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u>	<u>-----.</u>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생략) 2. <u>사업자등록증</u> 3. (생략) ③ ~ ⑥ (생략)	②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u>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